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I. 개 요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

1. 경 과

- 가. 발의자 : 김혜지 의원 외 48명
- 나. 의안번호 : 제 498 호
- 다. 발의일자 : 2023. 2. 6.
- 라. 회부일자 : 2023. 2. 9.

2. 주 문

- 서울시의회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14 공구 구간에 건설 중인 횡단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

3. 제안이유

- 지명 선정 기준의 절대적 원칙은 '지역 정체성'이다. 지명 결정 시

‘고덕’이라는 고유지명보다 ‘지역안배’ 명목을 앞세운 정치적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가 착공 시점부터 ‘고덕대교’로 명명해 언론·서울시민·경기도민에게 각인된 상태다. 각인된 명칭 대신 다른 명칭으로 결정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이다.
- 서울시의회는 명칭 심의·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 ‘고덕대교’로 건의·제안하며 원칙에 입각한 심의 의결을 요구한다.

4.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

1. 경 과

- 가. 제출자 : 신충수 외 9,674명
- 나. 소개의원 : 김혜지 의원
- 다. 청원번호 : 제 9 호
- 다. 제출일자 : 2023. 2. 21.
- 라. 회부일자 : 2023. 2. 22.

2. 청원요지

- ‘고덕대교’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14공구에 속한 교량으로 2017년 4월 25일 착공되어 남구리 나들목과 강동나들목 사이를 잇는 총길이 1,725m의 한강 횡단 교량임.
- 강동구민들은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제2경부 고속도로라고 부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준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
- 강동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강력히 건의 함.
 1. 공사 시행 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고덕대교’로 사용.
 2. 강동구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인 점, 공사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불편을 감내하며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함.
 3. 강동구 고덕동이 동부 수도권 중심지로 부상 중임

4.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납부함
5.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의 보도자료에서도 ‘고덕대교’로 명시함
6. ‘고덕대교’ 2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3. 주요내용

-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제정하도록 서울시가 국토부 등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주기를 청원함.

4. 청원소개의견 요지(소개의원: 김혜지 의원)

-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14공구 구간에 건설중인 횡단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입장을 표명하여 힘을 보태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 ‘고덕대교’로 명명되길 바라는 강동구민 9,675명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소개하는 바임.

Ⅱ . 검토의견

■ 개요

-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고덕대교’ 결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과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신설 한강횡 단교량 ‘고덕대교’ 명칭 제정에 관한 청원」(이하 “청원”)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구리~안성 구간에 건설 중인 연장 1,725m 한강 횡단 교량의 새 명칭을 ‘고덕대교’로 명명해 줄 것을 촉구·건의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입장을 표명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사안임.

■ (가칭)고덕대교 사업개요

- (가칭)고덕대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고속도로 제29호선)’ 구리~안성 구간인 제14공구 중 강동 나들목과 남구리 나들목 사이에 위치하여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흥동을 잇는 총연장 1,725m 왕복 6차로의 한강 횡단 교량으로서,
-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주관하고 (주)현대건설이 2016년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광주성남 나들 목~남구리 나들목 구간과 함께 2024년 개통 예정임.



■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 결정절차 개요

- 고속도로 시설물의 명칭은 통상 설계·건설단계에서 임시명칭을 사용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준공 1년 전 시설물이 소재한 지자체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협의하여 ‘한국도로공사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리성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명칭을 선정하고자 시설물(출입시설, 교량, 휴게소, 터널 등) 명칭부여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물 명칭 선정에 적용하고 있음.

[표] 한국도로공사의 교량 명칭 기준 (도로계09307-30899, '00.11.7)

구 분	명칭부여기준	비 고
본 선 교	하천횡단교량	· ○○천교, ○○강교: 해당하천명 사용
	철도횡단교량	· ○○철교: 리, 동 명칭 사용
	500m 이상 교량	· ○○교: 면, 구 명칭 사용
	500m 미만 교량	· ○○교: 리, 동 명칭 사용
횡단육교	· ○○육교: 리, 동 명칭 사용	· 횡단육교 : 고속도로 위로 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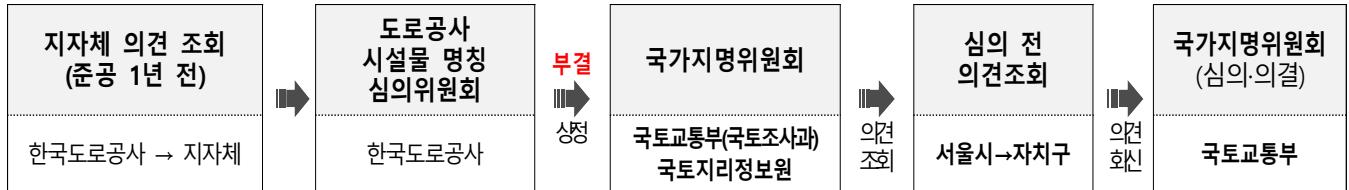
		교차하여 통과하는 지방도, 군도, 농로 등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상 설치 교량
IC, JCT 내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량: ○○IC교, ○○JCT교 · 기타교량: 시점부로부터의 순서에 따라 번호 부여 ○○IC2교, ○○JCT2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 주램프와 본선 교차지점 설치교량 - JCT: 본선과 본선 교차지점 설치교량 · 기타교량 : 시점우선, 하행우선, 본선우선순으로 순번 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이 있을 때는 가급적 반영 · 상징성이 큰 장대교량의 경우 혹은 교량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별도 명칭부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수리산교, 퇴옹교 · ex)서해대교, 부천고가교

- 다만,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지명위원회에 시설물 명칭 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요청할 수 있으며,
- 국가지명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조회를 비롯한 세부내용을 조사 후 심의·의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시설물 명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국가지명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¹⁾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며 시·도간 경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2. 18.>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계에 걸쳐있는 지명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명위원회에서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을 심의함.

[표] 지명결정 절차



※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 내부지침에 의거 운영

※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국토지리정보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가칭)고덕대교 명칭 결정 촉구 관련

- 동 건의안과 청원은 2023년 준공예정인 (가칭)고덕대교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교량 명칭이 ‘고덕대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임.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하는 (가칭)고덕대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교량 건설업체가 착공 시점부터 ‘고덕대교’로 명명해왔으나 정식 개통을 앞두고 교량 명칭을 놓고 교량 소재지인 강동구와 구리시의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구리시의회는 2020년 1월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가 아닌 구리시와 관련한 명칭으로 제정해 달라는 건의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을 채택하여 구리시, 강동구의회,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바 있으며, 현재 구리시는 교량의 80% 이상이 행정구역상 구리 시에 속해있는 만큼 ‘구리대교’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에, 강동구는 2021년 8월 ‘강동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량 명칭을 ‘고덕대교’로 제정하기로 의결하고 ‘고덕대교 명칭 제정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 특별시에 송부한 바 있으며, 강동구의회는 지난 2월 14일 폐회 한 제299회 임시회에서 ‘고덕나들목 및 고덕대교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가칭)고덕대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고덕대교’로 불려왔으며 일반적으로 남·북 도로의 경우 남측을 시점으로 보고 있어 교량 시점의 행정구역인 고덕동 지명을 활용하였다는 점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IC의 명칭이 ‘강동IC’로 내정되어 있어 이와 연관된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의 ‘고덕대교’ 명칭은 의미있고 사회 통념상 무리가 없어 보임.
- 반면에, 구리시에서 요청하는 ‘구리대교’ 명칭과 관련하여 인근 2km 이내 지역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구리대교’로 명칭을 제정할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자칫 혼선의 우려가 예상됨.
- 다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명 업무 편람」, 의 ‘지명 표준화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

할구역에 해당하는 지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를 반영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지역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킬만한 지명은 배제토록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경기도 구리시 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갈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됨.

-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강동IC와 고덕강일지구의 올림픽대로 접속램프의 통합설치를 결정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9조²⁾에 따라 사업비 분담 협약을 2018년 11월에 체결 하여,
- SH공사의 경우 총사업비 3,710억원 중 531억 6천만원을 총 3차(1차: 50억원('19.8월), 2차: 415.2억원('20.10월), 3차: 66.4억원 ('22.11월))에 걸쳐 납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기여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9조(재원부담)
①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출근, 통학 등 일상적인 광역교통수요 발생 특성, 교통시설 확충 현황·계획,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
2.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인구수, 주택·상업·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
3. 개발사업지구와 중심 생활권과 거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 3에 따른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④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별 사업비는 개선대책이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시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지명 업무 편람」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2.)

8.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지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합의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1) 원칙 4, 5, 6의 항목

4. 다음의 특성을 갖는 지명을 선정한다.

- (1) 현지에서 현재 불리고 있는 지명
- (2)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문화유산 및 장소의 의미를 반영하는 지명

5. 다음의 특성을 갖는 지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다른 지명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1) 현대국어 사용의 관습에서 벗어난 지명(외국어, 잘못된 맞춤법 등)
- (2) 부정적인 어감의 지명 (사회적 배제의 의미를 포함한 지명)
- (3) 상업화의 동기에서 비롯된 지명
- (4) 공유하는 자연지형물의 요소를 이용하여 배타적으로 지정하는 지명
- (5) 동일 지명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
- (6) 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자의 편의에 지장을 주는 지명
- (7) 일련의 숫자를 이용해 지정하는 지명

6. 인명을 지명으로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생존 인물의 이름은 배제한다.
- (2) 지역 주민이 선호하고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경우 지역과 관련된 사후 10년이 경과된 인물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를 반영하는 지명을 찾도록 노력한다.
-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지역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지명을 배제한다.
- (4) 인공구조물의 경우, 건설 중에 임시로 사용했던 명칭은 4.(1)에 규정한 현지에서 현재 불리는 지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